

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4] <개정 2021. 12. 31.>

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

(제30조제1항제7호 관련)

쇠고기(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.10.0000호, 제0201.20.1000호, 제0201.20.9000호, 제0201.30.0000호, 제0202.10.0000호, 제0202.20.1000호, 제0202.20.9000호 및 제0202.30.0000호)

이행연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기준발동물량 (메트릭톤)	42,501	43,351	44,218	45,103	46,005	46,925
특별긴급관세율(%)	30.0	30.0	30.0	24.0	24.0	24.0
이행연도	2028년	2029년	2030년			
기준발동물량 (메트릭톤)	47,863	48,821	해당없음			
특별긴급관세율(%)	24.0	24.0	0.0			